

간호대학 학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학칙」 제30조의2와 「학칙 시행세칙」 제69조에 따라서 간호대학 간호학과의 교육과정 운영과 졸업사정 기준을 포함한 간호학교육인증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1.)

제2조(간호학교육인증 운영위원회) ① 간호학교육인증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학장으로 하고, 간호학과 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다른 위원은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행정팀장 또는 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할 수 있다.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12. 3.)
 1. 간호교육인증 교과과정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교육과정과 이수

제3조(전공기초) ① 전공기초과목은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3. 1., 2021. 4. 5.)

1. 자연과학(12학점): 인체해부학및실습, 병원미생물과감염, 인체생리학및실습, 병태생리, 약리학
2. 인문사회과학(8학점): 간호학기초사회, 인간심리의이해, 인간성장발달, 인간관계및의사소통

② (삭제 2018. 12. 3.)

제4조(졸업기준) ① 졸업사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조 개정 2017. 3. 1., 2018. 12. 3., 2019. 3. 1.)

구 분	이수학점
공통교양과목	12학점
균형교양과목	15학점 이상
전공기초과목	20학점
전공과목	73학점 이상
계	130학점 이상

1. 공통교양과목 이수: 「학칙 시행세칙」 제69조제2항제1호의 기준 충족
2. 균형교양과목 이수: 과학과기술 영역의 일반생물학(간호학), 일반화학(간호학) 6학점 및 철학과역사 영역에서 3학점과 사회와문화, 문학과예술, 글로벌리더십의 3개 영역 중에서 6학점(총 15학점) 이상 이수
3. 전공과목 이수: 전공과목은 73학점(임상실습과목 23학점 이상 포함)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함

② 간호학과 야간특별편입과정 학생의 학점인정 및 졸업기준은 우리 대학교 「학칙」 과 「학칙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5조(졸업시험) ① 간호학과와 의전공필수교과목인 졸업논문을 졸업시험으로 대체하며, 졸업 시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3. 1.)

1. 7학기 이상 등록
 2. 학장이 별도로 정한 과목을 이수(단, 교직이수자는 제외)
 3. 제2호의 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학과장이 부여하는 과제 수행
- ② 졸업시험 과목은 간호사국가고시 시험과목과 동일하게 출제한다.
- ③ 졸업시험의 합격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전체과목에 대해 응시해야 하며, 응시하지 않은 과목은 영점으로 처리한다.
 2. 전체 평균이 60/100 이상 각 과목별 성적이 40/100 이상일 경우에 합격으로 처리한다.
 3.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불합격처리하며, 「학칙 시행세칙」 제69조에 의하여 졸업이 불가능하다.
 4. 불합격자는 수료 후 2년 이내 (단, 군 입대 기간은 제외)에 졸업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

제6조(편입학생 학점인정) ① 편입학생의 학점인정은 다음과 같다.(조 신설 2018. 12. 3., 개정 2021. 4. 5.)

편입학시기		3학년	
졸업학점(수료학점)		130학점	
인 정 학 점	공통교양과목	12학점	
	균형교양과목	15학점	
	일반교양과목	26학점	
	전공기초과목	자연과학	12학점
		인문사회과학	(8학점)
	전공과목	(12학점)	
	타전공과목	-	
계	65학점		

- ※ ()안의 숫자는 전공기초 및 전공 최대인정 학점 수
- ② 공통교양과목과 균형교양과목은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③ 전공기초과목 중 자연과학영역과목은 12학점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인문사회과학영역은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우리 대학교 전공기초과목으로 인정신청 시 일반교양과목 학점인정범위 내에서 최대 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④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을 우리 대학교 전공과목으로 인정신청 시 일반교양과목 학점인정범위 내에서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⑤ 전공기초과목 및 전공과목 학점인정은 학과장을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전공기초과목 및 전공과목의 성적등급은 P(Pass)로 한다.
 - ⑥ 전공과목(전공필수과목 포함)은 재학 학년도에 편성되는 교육과정에 맞추어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학칙」 과 「학칙 시행세칙」을 준용한다.(조 신설 2018. 12. 3.)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졸업사정의 기준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부터 시행한다.
(균형교양과목 필수이수 영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입학자는 과학과기술 영역의 일반생물학(간호학), 일반화학(간호학) 6학점과 철학과역사, 사회와문화, 문학과예술, 글로벌리더십 4개 영역 중에서 중복 없이 6학점(총 12학점)을 이수하여도 된다.
4. 이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글쓰기기초과목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18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글쓰기기초 과목 미이수로 인해 부족한 공통교양 3학점은 면제하되, 균형교양 과목 중에서 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졸업시험 응시자격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202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병원미생물 전공기초과목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14학년도부터 2020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병원미생물 과목을 미이수한 학생은 병원미생물과감염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